

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

화학물질관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(10.4일 시행)

- ① (기술인력)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('23년→'28년)
- ② (관리자.기술인력 자격) 표면처리,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(12종 추가, 총 37종)
- ③ (취급 담당자 교육)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/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
- ④ (화학물질관리대장)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'구매용도'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

□ (기술인력) 30인 미만 사업장의 완화된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유효기간 | '23.12.31일까지 | '28.12.31일까지 |

□ (관리자.기술인력 자격) 표면처리, 화학분석 등 자격 추가 인정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----|--|---|
|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| - 화공, 대기, 수질, 가스, 위험물 등 자격증 취득자(25종) - 안전교육 32시간 이수자 | - 화공, 대기, 수질, 가스, 위험물, 표면처리, 정밀화학, 화학분석, 화약류제조 등 자격증 취득자(37종) - 안전교육 32시간 이수자 |
| 기술인력 | - 화공, 환경, 가스, 위험물 등 자격 취득자(28종) 중 5년~7년 경력자 -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-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| - 화공, 환경, 가스, 위험물, 표면처리, 정밀화학, 화학분석,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자격자(37종) 중 5년~7년 경력자 - 석사 학위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-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 이수자 |

□ (취급 담당자 교육) 취급전에 16시간 또는 취급 전/후 각각 8시간 이수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취급 담당자 | - 취급 전에 안전교육(16시간) 이수 | - 취급 전에 안전교육(16시간) 이수 하거나 취급전/후 각 8시간* 이수 |

* 취급 후 3개월 이내 이수하고, 6개월 이상 취급업무 수행자에 적용('25.1.1부터 시행)

□ (화학물질관리대장) 관리대장 양식의 '용도'란을 '구매용도'로 명확화

-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'구매용도' 확인하고 기록(별지 제75호서식 개정)